

# 일반 FAQ (자주하는 질문)

## 1. 항소란 무엇입니까?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비동의는 처분 자체의 발행, 위반의 분류, 벌칙 또는 완화 요건을 포함한 처분의 어떠한 측면에서도 비롯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또한 완화 실패 통보, 특별 명령 또는 특별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이의 신청 및 이의제기를 안내하는 규칙과 규정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호에 수록되어 있으며, 제345절부터 시작합니다.

## 2. 제시간에 처리되려면 언제 항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고용주는 처분 안내를 받고 **영업일 15일** 안에 항소를 해야합니다. 영업일 15일이 넘어 항소를 제출하는 경우, 항소위원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각 제출이라면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지각 제출이란 일반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을 상황을 뜻합니다. 항소 제출 및 늦은 항소에 대한 법규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호 359절 및 359.1절에 나와 있습니다.

## 3. 산업안전보건청(Cal/OSHA)과 산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OSHAB)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산업안전보건청과 산업안전보건심판위원회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Cal/OSHA라고도 알려진 산업안전보건청은 처분, 명령, 통지의 발행, 민사 처벌, 완화 요건 및 위험 상태 시정 날짜를 강제하여 캘리포니아의 산업 안전 및 건강법을 집행합니다.

보건청은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직원 단체에 대한 조언과 함께 사업주에게 현장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서비스는 처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직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OSHAB)는 청문회를 수행하고, 사실을 발견하며, 직업안전보건부 인용문의 항소와 작업장 안전을 지배하는 규정의 위반을 주장하는 기타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항소위원회는 이의 처분에 대해 설명하는 서면 명령과 결정을 발표합니다.

4. 어디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종이 양식을 작성하는지 또는 OASIS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작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항소위원회에서 서면 양식을 받아 항소를 제기하거나 항소위원회 웹사이트 [www.dir.ca.gov/OSHAB](http://www.dir.ca.gov/OSHAB)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항소 중인 각 처분 및 항목에 대해 별도의 용지인 2번째 페이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2번째 페이지를 복사하십시오. 완성된 서면을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Californi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ppeals Board), 2520 Venture Oaks Way, Suite 300, Sacramento, CA 95833로 보내야 합니다.

항소는 온라인 [www.dir.ca.gov/OSHAB](http://www.dir.ca.gov/OSHAB)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OASIS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정이 만들어지면 로그인하여 안내를 따라 온라인으로 항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으로 항소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서면 양식을 제출해도 되나요?

고용주는 항소 제출시 두 방법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 양식은 [www.dir.ca.gov/OSHAB](http://www.dir.ca.gov/OSHAB)에서 다운로드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서면을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Californi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ppeals Board)에 우편 또는 야간 우편 서비스 또는 직접 배달해야 합니다. 또는, 고용주는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에 로그인하고, 온라인으로 전자 항소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 항소는 온라인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Californi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ppeals Board)에 제출해야 합니다.

6. 항소 절차를 마치고 행정법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이의 신청 절차 완료에 도달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은 고유하기에 소요 시간은 각 사례별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부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행정법 판사의 공판이 필요한 경우보다 빨리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공판까지 가는 사건은 당사자가 행정법 판사로부터 공판 기간과 고려해야 할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판결이 나기까지 몇 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7. 나는 저를 대표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야합니까?

**아무나** 고용주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물이 공판 절차동안 고용주의 이득에 대해 대신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항소가 제기되는 사항들 대부분은 행정법에서

해당 영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공판 과정동안 고용주는 자신의 이득을 대신하여 변호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8. 행정법 판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행정법 판사"는 제6605절 및 제6607절에 따라 항소위원회가 공판을 수행하고 판결을 결정하는 공판 책임자로 임명하는 인물입니다. 배정표에 오른 사건이 시작될 때 행정법 판사가 귀하의 사건에 배정될 것입니다. 배정표에 오른 항소는 완전하고 시기 적절한 항소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9. 행정법 판사의 공판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오. 귀하는 처분을 발송한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청사무소의 지구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비공식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지역 관리자 모두가 합의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지역 관리자가 합의 완료를 도와드립니다. Cal/OSHA 또는 부와의 비공식 회의는 항소를 구성하지 않으며, 15일간의 항소 기간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청문회는 행정법 판사에 의해 실시됩니다. 당사자들은 공판 통지를 수신하여 공판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10. 변론하러 가지 말고 비공식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하나요?

비록 대부분의 항소는 공판 전에 해결되지만, 고용주는 공식 공판에서 해당 문제를 공과에 따라 취급하고자 공판을 열 수 있습니다. 고용주나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부가 공판 전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강요하는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11. 일단 행정법 판사가 내 사건에 배정되면, 내가 판사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답은 **아니오**입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조 제352절에서 행정법 판사와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소통(ex parte communication)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소통(ex parte communication)은 귀하의 논쟁 상대방을 소통에 포함하지 않고 귀하의 사건에 할당된 행정법 판사와의 서면 또는 구두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법 판사에게 (미국 메일 또는 이메일을 통해) 편지를 쓸 경우, 해당 사건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동시에 문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본인 사건에 배정된 판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면, 이 통신은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이 전화통화에 나오는 회의 통화여야 합니다.

12. 내가 항소위원회나 내 사건에 배정된 행정법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도 되나요?

항소위원회는 전자우편을 통한 문서 서비스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명령 요청 또는 변론 취지서와 같은 사건 문서는 항소 위원회에 발송하거나 OASIS 인터넷 포털을 통해 업로드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간혹 행정법 판사가 전자우편으로 변론 취지서나 기타 문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전달 방법은 판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항소위원회에서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공식 서비스는 우편, 개인 배송 또는 OASIS 인터넷 포털을 통한 배송을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355.4절을 참조하십시오.

합의 조건은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되지만 전자우편에 복사된 모든 당사자에게만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 당사자가 합의 조건을 설명하는 전자우편을 다른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 판사는 모든 당사자가 전자우편을 받을 때까지 합의 사항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귀하와 합의하는 지역 관리자는 할당된 행정법 판사에게 정산 조건을 적절하게 제출하는 올바른 방법을 당사자에게 잘 안내합니다.

13. 항소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 다른 당사자에게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예. 일단 항소가 항소위원회에 제출되고 소송 번호를 부여받으면, 항소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문서도 해당 문제의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즉, 복사)되어야 합니다.

14. 서비스 선언은 무엇입니까? (소장 송달)

서비스 선언(소장 송달이라고도 함)은 선언인(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위증 시 처벌 하에, 자신이 행동 당사자가 아니며, 18세 이상임을 나타내는 진술로, 그 진술을 이메일 또는 기타 서비스된 문서에 기술하여 특정 날짜에 발송한 내용입니다. 서비스 선언에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자신의 우편 주소를 포함하고 문서의 복사본을 받은 개인 또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15. 언어 통역가를 어떻게 요청합니까?

당사자는 서면으로 통역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은 통역가가 필요한 지위 회의, 사전 공판 회의 또는 공판 등의 상황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역가가 통역할 언어가 서면 요청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수화 통역가에 대한 서면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조 제376.5절을 확인하십시오.

16. 공판이 녹화되나요?

공판의 공식 기록은 항소위원회가 전자기기로 정리하거나 당사자들이 주선한 법정기자가 정리합니다. 법정 기자의 출석을 원하는 당사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조, 제376.7절에 따라 당사자가 법정 기자를 초대해야 합니다. 당사자들, 또는 판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법정 기자에게 공판 공식기록이 되는 녹취록을 녹화 대신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에 성적증명서를 제공하는 비용은 항소위원회가 아닌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17. 나는 기록의 사본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각 당사자는 무료로 녹화본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요청서를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Californi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ppeals Board), 2520 Venture Oaks Way, Suite 300, Sacramento, CA 95833로 보내야 합니다. 모든 요청에는 사건 이름(고용주), 검사 번호 및 공판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용량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 요청한 당사자에게는 공판 녹화 전자 사본을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요청자가 전자우편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이 사실을 항소위원회로 보내는 서신에 명시하십시오. 그러면 귀하가 공판 기록 사본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준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8. 인터넷 포털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항소를 신청하면 항소를 신청했을 때 내역이 기재된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터넷 포털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출된 항소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항소가 업로드된 날짜와 시간, 항소 처리 시 다음에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인쇄 가능한 접수증을 제공합니다.

19. 전자 항소를 완료할 시간이 없으면 작업을 저장하고 나중에 완료할 수 있습니까?

네, 작업 내용이 저장되고 해당 작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항소는 완료되고 공식적으로 제출될 때까지 항소위원회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심사숙고를 위해, 항소를 제출하려면 분명히 표시된 버튼이 있습니다.

20. 오후 11시 59분 이후에 전자항소 양식을 제출하면, 제 항소는 언제 제출될까요?

평일 오후 11시 59분 이후 또는 주말 동안 제출된 항소는 다음 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1. 항소위원회에 내 항소를 제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헬프 데스크가 있습니까?

네, 항소위원회에는 정보 및 지원 담당자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태평양 시간 기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16-274-5751입니다.

정보 및 지원 담당자는 온라인 항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숙지하고 있으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화량 때문에, 정보 및 지원 담당자가 편한 시간에 전화를 다시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2. 만약 제가 항소를 제기하고 나중에 위약금을 지불하고 항소를 철회하고 싶다고 결정한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항소를 제기한 고용주는 산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에 항소 취하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여 항소 취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지침에 따라 항소 철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는 언제라도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조, 제364절에 따라 기각될 수 있습니다.

23. 최종으로 결정된 벌금은 어떻게 지불하나요?

최종 주문 또는 판결(요약표와 함께 첨부)을 받은 사용자는 직접 항소위원회 회계 부서에 수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수표의 메모란에 검사 번호와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벌금 지불 방법 정보는 최종 주문 또는 판결에 첨부된 요약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벌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지불 방법도 요약 표에 나와 있습니다.

24. 제 항소가 제시간에 제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서면으로 지연 항소를 제기하고 지연 사유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와 소장 송달에 의해 서명된 선언서는 늦은 항소 요청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연 항소를 제기하기 위한 승인 요청에 대한 정보가 고용주에게 전송됩니다.

25. 항소 미완성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소 미완성 통지는 미완성 항소를 제기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의사를 표시한 고용주에게 발송되는 문서입니다. 항소 미완성 통지서는 고용주에게 항소를 완료하기 위해 어떤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항소 미완성 통지서를 주의 깊게 읽고 누락된 필요한 정보, 어디에 누락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 및 언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십시오. 항소위원회는 20일 동안 미완성 항소의 통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누락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6. 항소의 지각 제출 허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지각 항소 절차는 캘리포니아 규정 강령, 제8조, 제359절, 하위절 (b) 및 (c)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늦은 항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항소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지각 신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충분한 사실을 서면으로 항소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지각 항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지각 항소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명시된 모든 사실이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지식에 기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7. 항소 신청 및 완료에 대한 요구사항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캘리포니아 규정집은 어디에서 읽을 수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규정집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행합니다. 캘리포니아 산업안전건강항소위원회에 대한 항소 절차에 대한 규정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8호와 관련된 부분은 OSHAB 웹사이트 [www.dir.ca.gov/OSHAB](http://www.dir.ca.gov/OSHAB)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Other Information)"에서 "법규 및 규칙(Laws and Regulations)" 링크를 클릭하세요.

28. 최종 주문이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합의된 당사자는 행정법 판사의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이유를 기재하여 재심청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제6614절에 따라, 재심 청원은 최종 명령이나 판결 이행 후 30일 이내에 항소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재심 청원이 적시에 제기될 때, 항소위원회는 재심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소장에 제시된 주장의 시시비비를 다룰 것입니다.

29. 재심 청원은 어떤 특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예. 재심 청원은 선서 대상입니다. 이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위증죄의 처벌에 따라 청원에 서명한 사람의 개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청원이 사실임을 진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재심 청원은 반드시 노동법 제6617절에 있는 재심 근거에 기반해야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 근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위원회의 권한을 넘은 권력의 행사 또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존재의 허락이 없이 권력을 행사한 경우.
2. 주문 또는 결정이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3. 공판 진행 동안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사실의 조사 결과 주문 또는 결정에 반하는 경우.

청원서의 길이는 25페이지를 넘으면 안 됩니다.

30. 재심 후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합의된 당사자가 재심 청원을 제출한 후 항소위원회가 재심을 허가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심 청원의 모든 주장을 고려하고, 재심 후의 판결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결과 및 분석을 작성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어떤 당사자도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위원회의 명령 요청에 대해 재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종 항소위원회가 재심의 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31. 재심 후 판결을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재심 후 판결은 항소위원회 웹사이트 [www.dir.ca.gov/oshab/DAR\\_Decisions](http://www.dir.ca.gov/oshab/DAR_Decisions)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재심 후 판결은 West Law 및 LexisNexis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접근하려면 구독을 해야 합니다. 많은 지역 카운티 법학 도서관에는 Cal/OSHA 법을 연구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32. 내 사건이 아직 항소 중에 있을 때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요구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916-274-5751로 항소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 어디서 공판이 열리나요?

현재 공판은 다음 지역들에서 열립니다:

1. 레딩(Redding)
2. 오클랜드(Oakland)
3. 새크라멘토(Sacramento)
4. 소톡튼(Stockton)
5. 프레즈노(Fresno)
6. 베이커스필드(Bakersfield)
7. 밴 나이즈(Van Nuys)
8. 리버사이드(Riverside)

9. 웨스트코비나(West Covina)
10. 샌디에고(San Diego)
11. 온라인의 경우 Zoom 플랫폼을 통해

사건 공판이 열리는 장소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조 제376절에 따라 선택됩니다. 일반적으로 공판 장소는 "위법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고용 장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곳"이 될 것입니다.

34. 지위 회의 통지, 사전 공판 통지 또는 공판 통지를 받았는데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판에 참석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항소위원회에 연기를 청원해야 합니다. 연기를 관리하는 규칙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371.1절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왜 회의나 공판에 참석할 수 없는지 청원서에 명시해야 하고, 회의나 공판에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제공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연기에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청원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청원은 항소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문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위원회에 제출될 때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35. 신속 절차는 무엇입니까?

신속 절차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조 제373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들을 산업안전보건부에서는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경우로 분류됩니다. 만약 이 사건들이 항소되어 소송 당시 완화가 가능하지 않았다면, 소송은 신속 절차로 처리됩니다. 신속 사건은 사건이 완료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위 회의를 위해 일정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전 공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전 공판 회의 이후 60일 이내에 1일 공판을 열어야 합니다.

36. 신속 처리된 사건이 신속 절차에서 제거될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당사자들이 처분을 야기한 위험요소가 완화되었다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완화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해당 사건은 배정된 행정법 판사의 승인을 받아 신속처리된 트랙에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37. 규정 처분, 일반 처분 또는 중대 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 규정집의 제8조 제334절은 규정, 일반 및 중대 위반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a) 규제 위반 – 규정 또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허용, 게시,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건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규정 위반의 예로는 허가가 필요할 때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 일반 위반 – 중대한 성격은 아닌 것으로 한정적으로 결정된 위반으로, 직원의 직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이 있다."

"(c) 중대 위반 -- 부에서 위반으로 인해 실제 위험으로부터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고용된 장소에 '심각한 위반'이 존재하며, 반박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본문을 참조하십시오.

38. 이 아이콘이  ?

아이콘  (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 설명입니다. 도구 설명 위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39. 이 아이콘이  ?

아이콘  은(는) 정보를 조회하는 검색 기능입니다.

40. 이 아이콘이  ?

아이콘  은(는) 는 입력 검색 기준을 지우는 기능입니다.